

○답변요지(김창수 청소과장) : 소각량과는 관계없이 시간당 200kg 이하 용량의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여 처음 소각할 때만 신고함.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1. 15.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1995.6.20. 규칙 제2700호)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과태료처분통지등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제5호(단, 법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외)를 포함시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토록 함. (안 제29조제2항)

3. 개정근거

폐기물관리법(1993.3.6. 법률 제4541호) 제20조제3항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5호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단,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과태료 부과 및 처분통지등) ①(생략)	제29조(과태료 부과 및 처분통지등) ①(생략)	제29조(과태료 부과 및 처분통지등) ①(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단,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외)		
③~④(생략)	③~④(생략)	③~④(현행과 같음)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1996. 2. 10.
시민보건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소 : 마포구 중동 81-21
성명 : 권영무외 89인

나. 소개의원 : 윤명규, 김유현, 한수균 의원
다. 접수일자 : 96. 1. 31.

라. 회부일자 : 96. 1. 31.

다. 상정일자: 제36회의회(임시회) 제5차위원회(96. 2. 9.) 상정, 질의토론,
제36회의회(임시회) 제6차위원회(96. 2. 10.) 상정, 질의토론, 채택

2. 청원요지

본 청원은 마포구 중동 81-21 권영무외 89명이 낸 청원으로서 마포구 성산2동(중동)에 7곳의 경로당이 있지만 4곳은 사설경로당으로서 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3곳의 구립경로당이 있지만 마포구 중동 81-21(6통) 일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어 엄동설한에도 길가에 가건물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지역에 경로당 신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임.

3. 취지설명의 요지(소개의원: 한수균 의원)

본 청원은 마포구 성산2동 관내에 7곳의 경로당이 있지만 4곳은 사설경로당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나머지 3곳의 구립경로당은 중동 81-21(6통) 일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엄동설한에도 길가에 가건물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청원인들의 경로당 신축 요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4.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 경로당 건립을 요구하는 6통·54통·56통 및 21통 일대는 도시화의 거센 영향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최근 다가구·다세대건물이 활발하게 신축되어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곳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77명 거주하고 있음.

그러나 이지역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어 일부는 이웃해 있는 사립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큰 도로를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특히 이 지역은 인구밀도(748세대 2,194명)가 높고 중산층 이하 저소득 맞벌이가정이 많아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우리구 예산 형편을 고려하여 경로당 건립시 보육시설이 포함된 복합건물로 신축할 수 있는 방안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민숙원

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시설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0년대에 맞이하게 될 고령화 산업사회에 적합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동휘 위원): 성산2동에 있는 경로당수가 타동과 비교해서 인구비례상 적다고 보는가?

○ 답변요지(박남규 가정복지계장): 인구에 비하여 경로당수가 적음.

○ 질의요지(김동휘 위원): 청원이 타당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다면 경로당을 신축해주는 방향으로 하기 바람.

○ 답변요지(박남규 가정복지계장): 타당성이 있음. 당장은 예산상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97년까지 성산2동뿐만 아니라 구전체를 파악하여 필요없는 경로당은 폐하고 필요한 곳은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음.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심사결과 의견: 별첨

10. 기타사항: 96. 2. 10. 10:00~10:50 청원현장 답사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에대한의견서

○ 본 청원의 요지는 마포구 중동 81-21(6통, 21통, 54통, 56통) 일대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어 엄동설한에도 도로변에 가건물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을 신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 이 지역의 특성은 도시화의 거센 영향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최근 다가구·다세대 건물이 활발하게 신축되어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65세이상 노인이 77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휴식처인 경로당이 없어 일부는 이웃해 있는 사립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큰 도로를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밀도(748세대 2,194명)가 높고 중산층

이하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많아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경로당 건립시 보육시설이 포함된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청원인들의 진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

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구 가정복지시설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2000년대에 맞이하게 될 고령화 산업사회에 적합한 노인복지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 원 요 지 서

접수년월일	1996. 1. 31.	접수 번호	25
청 원 인	주 소 마포구 중동 81-21	성 명	권영무 외 89명
소 개 의 원	윤명규, 김유현, 한수균 의원	소관위원회	시민보건의위원회
건 명	마포구 중동 경로당 신축 요구에 관한 청원		
요 지	본 청원은 마포구 중동 81-21, 권영무외 89명이 낸 청원으로서 마포구 성산2동(중동)에 7곳의 경로당이 있지만 4곳은 사설경로당으로서 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3곳의 구립 경로당이 있지만 마포구 중동 81-21(6통) 일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어 업동설한에도 길가에 가건물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지역에 경로당 신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임.		

청 원 서

마포구 의원님께

해바라기 꽃은 피면서부터 해를 따라 고개를 움직입니다. 해를 따르지 못하는 그늘에 핀 해바라기가 태양을 찾아서 뭉부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 의원님 저희는 마포구 중동 6통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불철주야로 이 고장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또한 이 편지가 심려를 끼치는 것같아 죄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노인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님께 저희 6통의 숙원사업을 올립니다.

의원님 이 추운 업동설한에 호호백발 이 빠진 잇몸의 노인들이 거처할 곳 없이 도로가에 움막치고 삼삼오오 모여 장작불 지피며 움추려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것은 소득이 낮은 후진국 애기도 아니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소말리아의 애기도 아닌 저희구 중동 6통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분들은 저희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버님이 될 수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소망을 여쭙어 보았더니 얼큰한 북어국 한그릇도 아니고 명절이나 5월8일 어버이날 하루 기분 맞추려

찾아주는 가족보다도 우리 6통의 노인분들이 비막이라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갖는 것이 그분들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젊은 청춘과 인생을 사회와 국가를 위해 불사른 노인분들입니다. 국가와 사회에 버림을 받은채 이 외로운 그늘에 핀 해바라기와 같은 중동 6통 노인분들에게 우리 마포구 의원님께서 사랑과 인정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사람으로서 올바르게 보살펴야 한다는 어린이 헌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를 만들고 이 국가를 만들며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낸 노인들의 "6통 경로당"문제도 마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마포구 의원님 "중동 6통 경로당 건립"은 저희 중동 6통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철저하게 심사숙고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마포구 의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조국의 통일을 염려하는 국민이라면 빛을 잃어버린 해바라기와 같은 노인분들에게 비막이라도 할 수 있는 경로당에서 편하게 오손도손 지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어김없이 찾아

을 인생의 황혼기를 상기하며 인정과 사랑의 씨앗을 뿌려 이 땅의 노인을 공경하는 효성이 마포에 꽃피워질 때 충효의 높은 정신이 온마을에 퍼져 이 땅 역사에 민주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끝으로 마포구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월 31일
주민 일동 (6통)
대표 권영무 올림

해외 연수 귀국 보고서

-1995년도-

기간 : 1995. 10. 23.~11. 1.(9박10일)
대상국 : GREAT BRITAIN, FRANCE, ITALY, SWISS

마포구의회연수단

(다음 페이지에 계속)